

2017학년도 제1차 〈제328차 이사회 회의록〉

2017. 5. 18.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7학년도 제1차

<제32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1 인
참석임원	12 인	1 인

1. 일 시 : 2017. 5. 18(목) 07:30 ~ 10: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5월 10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김동연,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흥, 김선용 (12인)
- 감사 : 배홍기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병원장 탁승제, 총무처장 임재익,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행정부원장 박재호, 재무회계팀장 안영찬, 재무회계팀장 이재권 (7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행정처장 최종범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의료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임재익 총무처장 · 한상욱 기획조정실장 ·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8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7-95호(2017.5.10)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2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4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5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안 제7호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전면 개정(안), 의안 제8호 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의안 제9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10호 2017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147억 원 한도계약 승인(안), 의안 제11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12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13호 2016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14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재승인(안), 의안 제15호 법인 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 의안 제16호 대우학원 임원(감사) 선임(안) 등 16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를 보시면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2,08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이 6,164백만원으로 총수입금의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 및 기부금수입이 2,351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41백만 원, 교육외수입이 133백만원으로 운영수입 합계는 9,389백만원이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2,6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보수가 3,536백만원, 관리운영비 2,117백만원, 연 구학생경비 3,150백만원, 교육외비용이 54백만원으로 운영지출 합계는 8,857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이 259백만원, 고정자산매입지출이 2,640백만원, 고정부채상환액이 20 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3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2.28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산규모는 32,260백만원이며, 부채는 4,203백만원, 기본금 총액은 28,0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4,494백만원, 투자와 기타자산이 4,113백만원, 고정자산이 23,653백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184백만원, 고정부채가 19백만원이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22,259백만원, 임의적립금 4,108백만원, 운영차액 1,690백만원, 전기이월운영 차액 2,472백만원, 당기운영차액 △782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2,2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총수익은 9,389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등록금수입이 6,164백만원, 전입 및 기부금수입 2,351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41백만원, 교육외수입이 133백만원이며, 운영비용은 보수가 3,536백만원, 관리운영비 3,173백만원, 연구학생경비 3,150백만원, 교육외비용 53백만원, 기본금대체액 259백만원, 당기운영차액 △782백만원으로 비용총계는 9,3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배홍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 아주자동차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부 감사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사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신희택 : 결산(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 지원대학 선정에 따라 LINC+ 사업단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 <p>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학술정보센터산학협력단	<p>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 <p>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학술정보센터산학협력단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4 -

72동연

이 사 이 영 현

현 행	개 정
<u>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u>	<u>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단</u>
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	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
부 칙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3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속병원의 2016학년도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료수익은 2015학년도 실적대비 12.6% 증가한 474,626백만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456,661백만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148.3% 증가한 17,96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의료외수익은 20,303백만원, 의료외비용이 14,349백만원으로 4,8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현황으로 2017.2.28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총 자산규모는 247,473백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87,074백만원, 고정자산이 160,399백만원이며, 부채와 자본은 유동부채가 100,284백만원, 고정부채 33,186백만원, 자본이 114,0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속병원의 총수입은 567,645백만원이며, 총지출 금액은 529,766백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37,879백만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수입이 447,157백만원, 기타의료수입이 27,469백만원, 의료외수입이 32,796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324백만원, 차입금수입은 13,741백만원, 전기이월운영자금이 46,1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81,350백만원, 재료비는 162,714백만원, 관리비는 61,188백만원, 의료외비용은 23,797백만원, 기타투자자산지출은 308백만원, 고정부채상환 10,755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출금은 50,758백만원이 되었으며 차기이월운영자금은 37,8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장 : 먼저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의료기관회계규칙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6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의료원 리조트 회원권 구입절차의 적정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일부 리조트 회원권 구입 시 해당업체의 재무현황 분석절차와 구입 후에 해당업체의 재무현황, 시세추이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회원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비계량적인 지표를 함께 고려하고 취득 후에는 해당업체의 자산현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임상감사 등 의사수급 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아주대병원의 경쟁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과 비교시 병상당 인력은 유사한 수준이나 병상당 임상강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강사의 부족은 향후 의사수급에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임상강사를 포함한 의사수급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건물 임차 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는데, 임상역학센터 임차건물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장조사시에 임차 보증금을 분석한 이후로 10여년의 지난 지금 본 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역학센터 안성사업장의 임차와 관련된 현장조사와 함께 2017년 기준 임대보증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장 :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부속병원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문길주 : 결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4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사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 6 -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 이영현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에서 명시한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임을 명확히 하고 이 교원 외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의 해외 진출 사업 추진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의료 해외 진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징계사유 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임면’의 용어를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재되어 있는 학교의 장, 각급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통일하고 아주대학교 본부조직 명칭을 연구처에서 연구정보처로 국제협력처를 대외협력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희택 :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 수정 등으로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성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u>당해 학교의 장이</u>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u>총장이</u> 집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할 수 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7- 712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1. 이사 4년</p> <p>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③ 이 법인이 유지 · 경영하는 <u>학교의 장을</u>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u>학교의 장</u> 재임기간동안 이사로 한다.</p>	<p>1. 이사 4년</p> <p>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③ 이 법인이 유지 · 경영하는 <u>학교의 총장</u> 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u>총장</u> 재임기간동안 이사로 한다.</p>
<p>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p> <p>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이하 “교육이사” 라 한다)</p> <p>④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이하 “개방이사” 라 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p> <p>⑦ (삭제)</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u>학교의 장</u>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p>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p> <p>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이하 “교육이사” 라 한다)</p> <p>④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이하 “개방이사” 라 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p> <p>⑦ (삭제)</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u>총장</u>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간서명 란>

이사장

주 호석

이사

- 8 -

7/2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u>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u></p> <p>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p> <p>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u>사립학교의 장</u>을 겸할 수 없다.</p>	<p>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u>총장은 예외로 한다.</u></p> <p>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p> <p>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u>학교의 총장</u>을 겸할 수 없다.</p>
<p>제2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u>학교의 장 임면</u>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u>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u> 동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u>총장 임용</u>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원 <u>임용</u> 동의에 관한 사항 <p>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u>학교의 장</u>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p>제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u>총장</u>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9 -
기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자신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p> <p>제31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인사 중에서 <u>학교의 장이</u> 위촉하는 13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교외인사 2인 <p>② 전문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인사 중에서 <u>학교의 장이</u> 위촉하는 11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교외인사 3인 	<p>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p> <p>제31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인사 중에서 <u>총장이</u> 위촉하는 13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교외인사 2인 <p>② 전문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인사 중에서 <u>총장이</u> 위촉하는 11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교외인사 3인
<p>제32조(대학평의원의 위촉) ① 교원 ·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u>학교의 장이</u>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부교수 이상의 <u>전임교원</u> 중 추천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대학교는 5급 이상, 전문대학은 7급 이상의 정규직원 중 추천된 자 	<p>제32조(대학평의원의 위촉) ① 교원 ·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u>총장이</u>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부교수 이상의 <u>교원</u> 중 추천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대학교는 5급 이상, 전문대학은 7급 이상의 정규직원 중 추천된 자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0 -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3.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p> <p>② 동문 및 교외인사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u>학교의 장이</u> 위촉한다.</p> <p>③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에 후임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며, 대학평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p> <p>④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3.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p> <p>② 동문 및 교외인사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u>총장이</u> 위촉한다.</p> <p>③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에 후임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며, 대학평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p> <p>④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35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u>학교의 장이</u> 부의하는 사항 	<p>제35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u>총장이</u> 부의하는 사항
<p>제38조(기타 세부사항)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학교의 장이</u> 따로 정한다.</p>	<p>제38조(기타 세부사항)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총장이</u> 따로 정한다.</p>
<p>제46조 (임면) ① <u>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u>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u>학교의 장의</u> 정년은 65세로 하며, <u>학교의 장에</u>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46조 (임용) ① <u>총장은</u>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용</u>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u>총장의</u> 정년은 65세로 하며, <u>총장을</u>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간서명 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1 -

7/26/2021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u>학교의 장</u> 이외의 전임교원과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임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다만,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u>학교의 장</u>이 면직한다.</p>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면권자</u>가 교원을 <u>임면하였을 때에는</u>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u>학교의 장</u>은 제2항의 교원을 <u>임면하였을 때에는</u>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다만,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u>총장이</u> 면직한다.</p>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용권자</u>가 교원을 <u>임용하였을 때에는</u>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u>임용하였을 때에는</u>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총장은 제2항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되,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p>
<p>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p>	<p>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 영현

현 행	개 정
<p>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p> <p>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3.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제49조(신규임용) ① 신규 채용되는 <u>전임교원</u>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u>임면</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여 보수에 관한 사항은 <u>학교의 장</u>이 따로 정한다. 2. 근무조건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u>학교의 장</u>이 따로 정한다. 3. 연구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u>학교의 장</u>이 따로 정한다. 4. 재계약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u>학교의 장</u>이 따로 정한다. 5. 그 밖의 <u>학교의 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u>학교의 장</u>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u>학교의 장</u>이 <u>임면</u>한다. <p>제5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u>임면권자는</u>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p> <p>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3.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제49조(신규임용) ① 신규 채용되는 <u>교원</u>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u>임용</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여 보수에 관한 사항은 <u>총장</u>이 따로 정한다. 2. 근무조건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u>총장</u>이 따로 정한다. 3. 연구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u>총장</u>이 따로 정한다. 4. 재계약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u>총장</u>이 따로 정한다. 5. 그 밖의 <u>총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u>총장</u>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u>총장</u>이 <u>임용</u>한다. <p>제5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u>임용권자는</u>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제5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u>임면권자는</u>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제5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u>임용권자는</u>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간서명 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3 -

기2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p> <p>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p> <p>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p> <p>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p> <p>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p> <p>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p> <p>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p> <p>9.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p> <p>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p> <p>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p> <p>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p> <p>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p> <p>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p> <p>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p> <p>9.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p>
<p>제5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제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다만, 장기 휴양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u>임면권자는</u>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2. 제5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p> <p>3.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p> <p>4. 제5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제5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제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다만, 장기 휴양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u>임용권자는</u>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2. 제5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p> <p>3.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p> <p>4. 제5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4 -

7/2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5. 제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p> <p>6. 제5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u>임면권자는</u>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7. 제5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8. 제5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준용한다.</p>	<p>5. 제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p> <p>6. 제5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u>임용권자는</u>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7. 제5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8. 제5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준용한다.</p>
<p>제5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u>임면권자</u>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u>임면권자는</u>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5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p>	<p>제5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u>임용권자</u>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u>임용권자는</u>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5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p>
<p>제54조 (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 <u>임면권자</u>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u>임면권자는</u>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54조 (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 <u>임용권자</u>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u>임용권자는</u>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간서명 란>

이사장

주 호석

이사

- 15 -

김 중언 이사 | 영현

현 행	개 정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그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일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p> <p>④ <u>임면권자는</u>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임면권자는</u>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u>임면권자는</u>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그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일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p> <p>④ <u>임용권자는</u>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임용권자는</u>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u>임용권자는</u>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p>
<p>제58조 (명예퇴직) ① <u>전임교원</u>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그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58조 (명예퇴직) ① <u>교원</u>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그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59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u>학교의 장</u>은 제외한다)의 <u>임면</u>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p>	<p>제59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u>총장</u>은 제외한다)의 <u>임용</u>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기동연

이사이영천

현 행	개 정
학원, 보건대학원의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건대학원의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p>제6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심의에 관한 사항</p> <p>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p>제6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심의에 관한 사항</p> <p>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p>제61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조직한다.</p> <p>②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4인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p> <p>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제61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조직한다.</p> <p>②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4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p> <p>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제6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제6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7 -

7/2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한다.</p> <p>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다.</p> <p>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4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u>학교의 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p>제64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u>총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p>제6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u>학교의 장</u>이 임명한다.</p>	<p>제6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u>총장</u>이 임명한다.</p>
<p>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각 학교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1인 <p>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p> <p>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p> <p>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p> <p>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u>학교의 장</u>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각 학교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1인 <p>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p> <p>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p> <p>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p> <p>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u>총장</u>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초과할 수 없다.</p> <p>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p>제68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u>각급 학교의</u>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u>당해</u> 교원의 <u>임면권자는</u>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p>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p> <p>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p> <p>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p>	<p>과할 수 없다.</p> <p>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p>제68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u>임용권자는</u>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p>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p> <p>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p> <p>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p>
<p><간서명 란></p> <p>이사장 주호석 이사</p>	<p>기동연 이사이영현</p>

현 행	개 정
<p>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p>	<p>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p>
<p>제73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u>임면권자가</u>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3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u>임용권자가</u>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2년</u>(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제7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3년</u>(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u>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u>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제80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p>제80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0 -

기동연 이사 | 영현

현 행	개 정
<p>한 자</p> <p>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적 및 기능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u>임면권자가</u>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p> <p>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	<p>한 자</p> <p>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적 및 기능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u>임용권자가</u>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p> <p>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
<p>제81조 (<u>임면</u>) ① 일반직원의 <u>신규임용</u>,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u>임면</u>”이라 한다)은 <u>임면권자가</u>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임면</u>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u>임면</u>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해당 <u>학교장</u>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p>	<p>제81조 (<u>임용</u>) ① 일반직원의 <u>신규채용</u>, 승진, 승급, 전직, 전보, <u>겸임</u>, <u>파견</u>, 강임, 휴직, 직위해제, <u>정직</u>,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u>임용</u>”이라 한다)은 <u>임용권자가</u>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임용</u>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u>임용</u>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u>총장</u>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p>
<p>제87조 (<u>학교의 장 등</u>)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p> <p>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p> <p>③ 대학교에 교무부총장(校務副總長), 의무부총장(醫務副總長)과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p> <p>④ 교무부총장은 의무(醫務)와 산학협력 이외의 교무(校務)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무(醫務)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p> <p>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p>	<p>제87조 (<u>총장 등</u>)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p> <p>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p> <p>③ 대학교에 교무부총장(校務副總長), 의무부총장(醫務副總長)과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p> <p>④ 교무부총장은 의무(醫務)와 산학협력 이외의 교무(校務)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무(醫務)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p> <p>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p>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1 -

7/26 동언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9조 (본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연 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대 외협력처를 둔다. ②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 각 처 및 기타 본부조직의 세부사항은 직 제규정으로 정한다.</p>	<p>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9조 (본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연 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 ②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 각 처 및 기타 본부조직의 세부사항은 직 제규정으로 정한다.</p>
<p>제92조 (의료원) ①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 원 및 의학연구의 업무를 조정·통합하기 위 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 실장 및 대외협력실장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 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부교 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 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④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 다. 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 1. 현대아주의원 ⑥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u><신설></u></p>	<p>제92조 (의료원) ①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 원 및 의학연구의 업무를 조정·통합하기 위 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 실장 및 대외협력실장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 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부교 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 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④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 다. 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 1. 현대아주의원 ⑥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⑦ 의료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 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22 -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93조 (<u>학교의 장</u>)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p> <p>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p> <p>③ (삭제)</p> <p>④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보직 교원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3조 (<u>총장</u>)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p> <p>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p> <p>③ (삭제)</p> <p>④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보직 교원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u>부 칙</u></p> <p>(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5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은 유사업무 및 연계부서 통폐합을 통해 업무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전략실행으로 현장력 및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외래원무팀과 입원원무팀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암센터 산하 운영지원팀이라는 부서 명칭이 의료원 내에 부서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의 보직 명칭과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부서 명칭을 암센터지원팀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23 -

김동연

이사 | 영현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 15 조(진료부) ① 내지 ② <생략></p> <p>③ 진료부에는 진료지원부서로 감염관리실, 진료협력센터,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사업팀, 의용공학팀을 두며, 암센터에는 <u>운영지원팀</u>을 둔다.</p> <p>④ 내과부 및 외과부 각과, 진료 각과,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⑤ 각 센터의 소장은 임상과장장을 겸직할 수 있다.</p> <p>⑥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을, 감염관리실, 진료협력센터에는 실장 또는 소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 15 조(진료부)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진료부에는 진료지원부서로 감염관리실, 진료협력센터,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사업팀, 의용공학팀을 두며, 암센터에는 <u>암센터 지원팀</u>을 둔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 20 조 (행정부) 행정부에는 총무팀, 인사복지팀, <u>외래원무팀</u>,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법무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 20 조 (행정부) 행정부에는 총무팀, 인사복지팀, <u>원무팀</u>,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법무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u>부 칙</u></p> <p><u>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u></p>

제 6 호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은 개원 23주년 및 의과대학 28주년을 감안하여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담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명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4 -

김동연

이사 이영현

퇴직 요건은 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이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당해연도 기초연봉의 1/12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하고자 하며, 명예퇴직 결정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원 교원 인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상협 : 본교의 규정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신·구 조문대비표

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에 따라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교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정관」 제46조 제2항에 의해 임용된 교원에만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의 요건) ① 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본인이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으로 의료원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

3.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교원의 인원조정이 필요하여 의료원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

② 전항에 불구하고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교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5 -

7/2 동연 이사 이영현

제 정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교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제4조(명예퇴직수당 산정) ① 명예퇴직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의 퇴직 당해년도 기초연봉의 1/12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기초연봉이라 함은 「의료원 보수규정」 제4조(교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의료원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의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교원의 경우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연구지원금 전액, 연수기간 중 지급된 연수지원금 전액을 소속대학(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의료원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예정일 60일 전까지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
3. 상위직 교원

② 총장은 전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자를 결정한다.

③ 명예퇴직대상자가 결정되면 소속대학(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등) ① 명예퇴직대상자는 명예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명예퇴직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6 -

7/2 동연

이사 이영현

제 7 호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전면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전면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의 예산 및 회계 관련한 업무 및 관련법규 등을 점검하여 예산 편성 및 확정절차를 현실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반영 하였으며 기타 문구정리 및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화한 규정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전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전면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전면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2장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u>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u>「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2장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전면 개정
<p>제 3 조(예산 및 회계년도) 의료원의 예산 및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종료한다.</p> <p>제 4 조(예산 및 회계단위) 의료원의 예산과 회계단위는 성질별 및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비예산 (회계) • 부속병원예산 (회계) <p>제 5 조(회계기준) 부속병원회계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회계기준 및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의해 계리할 수 있다.</p>	<p>제 3 조(예산 및 회계년도)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제 4 조(회계구분) 의료원의 예산과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한다.</p> <p>제 5 조에 통합></p>
	<p>제 5 조(계정과목) 교비회계 계정과목은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고 부속병원회계 계정과목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하되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p>
제 2 장 예 산	제 2 장 예산의 수립
<p>제 1 절 통 칙</p> <p>제 6 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②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p> <p>제 7 조(예산의 구분) ① 의료원 예산은 전 제4 조 규정에 의한 성질별 및 기관별로 구분 편성 한다.</p> <p>②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금예산, 자본 예산,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p> <p>③ 세입 및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p>	<p><삭 제></p> <p>제 6 조(예산총계주의) 수입 및 지출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5조로 이동></p>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8 -

기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전면 개정
<p>④ 전 제3항에 의한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은 따로 정한다. 다만, 교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p> <p>제 8 조(예산단위 금액) 예산단위 금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미만은 절상한다.</p>	<p>〈삭 제〉</p>
<p>제 9 조(관장부서) ① 예산의 편성, 조정, 통제 및 분석보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되며, 기획조정실장을 예산관리자로 한다.</p> <p>②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요구 및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소속부서장(이하 “예산사용부서”라 한다)이 관장한다.</p>	<p>제 7 조(관장부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2 절 예산의 편성</u></p> <p>제 10 조(예산편성의 지침) ① 예산관리자는 매년 <u>10월중으로</u>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경영방침 2.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 3. 예산과목별 편성여부 4. 예산과목해소 및 작성여부 5. 기타 예산안 작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 8 조(예산편성기준) ① 예산관리자는 매년 <삭제> 익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한다.</p> <p>② 예산편성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환경 2. 예산편성기본방향 3. 예산편성절차 및 일정 4. 예산과목별 편성기준 5. 기타 예산안 작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 11 조(예산의 요구) 예산사용부서는 전조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2월 말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9 조(예산의 요구) 예산사용부서는 제8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2 조(예산의 성립) ①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 “의료원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에 제출 심의한</p>	<p>제 10 조(예산의 확정) ①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료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29 -

7/26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전면 개정
<p>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p> <p>② 전항에 의한 “의료원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의한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자체 없이 이를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②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안이 확정된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이를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13 조(사업시행계획서) 예산사용부서는 예산 성립 통보를 받은 후 자체 없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예산사용부서로 통보한다. 다만, 사업시행 계획은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 삭 제></p>
<p>제 14 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p> <p>1. 의료원 교직원의 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p> <p>2. 시설의 유지비</p> <p>② 전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③ 전 제1항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1 조(준예산) ①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1. 의료원 교직원의 보수</p> <p>2. 시설의 유지관리비</p> <p>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p> <p>4. 기타 의료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p> <p>② 전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6 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p>	<p>제 12 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30 -

기동연 이사이영현

현 행	전면 개정
<p>제 15 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p> <p>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하되 총예산의 1% 이상을 책정한다.</p>	<p>제 13 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출예산에 계상한다.</p> <p>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목적 및 금액을 작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p>
<p>제 17 조(예산의 수정) ① 성립 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자금사정,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예산관리자는 예산사용부서의 수정 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결정사항을 예산사용부서에게 통보한다.</p>	<p><삭 제></p>
<p><장 신설></p> <p>제 3 절 예산의 통제와 집행</p>	<p>제 3 장 예산의 통제와 집행</p> <p><삭 제></p>
<p>제 18 조(예산의 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항목, 물동량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p> <p>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관계는 발생시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p>제 14 조(예산의 통제) 모든 자금의 집행은 예산통제부서의 사전 · 사후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단, 자금의 성질에 따라 자율통제 계정을 둘 수 있다.</p>
<p>제 19 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예산사용부서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 20 조(심사) 예산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회계실무부서(회계단위별 해당부서 즉 경리팀, 구매관리팀, 시설관리팀 등을 뜻함)는 제 지출행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 15 조(예산운영) ① 예산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주관부서(구매관리팀, 시설관리팀, 의용공학팀 등을 뜻함)는 집행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통제를 받아야 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31 -

김동연
이사
이영천

현 행	전면 개정
<p>1. 예산통제 확인 유무</p> <p>2. 예산과목의 일치여부</p> <p>3. 기타 관계 부서에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재무회계팀은 제 지출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p>1. 예산통제 확인 유무</p> <p>2. 예산과목의 일치여부</p> <p>3. 기타 관계 부서에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21 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 16 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22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제 17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p>
<p>제 23 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관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제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예산을 전용하였을 때에는 전용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8 조(예산의 전용) ①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제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24 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공사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 예산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 19 조(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지출예산 증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32 -

7.2 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전면 개정
	<u>출할 수 있다.</u>
제 25 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목적 및 금액을 작성, 소정의 승인 절차를 얻어 집행한다.	<u><제13조에 통합></u>
<u>〈장 신설〉</u>	<u>제 4 장 기타</u>
제 26 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u>부 칙</u> <u>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u>

제 8 호 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발의.

병원장 탁승제 : 의료원 병원동 증축 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기관 평가 시설 기준에 응급전용 수술실 확보 및 수술건수 증가에 따라 수술실을 2개실 증설하고자 합니다. 계획 면적은 약 $40.09m^2$ 이며 3층의 채광을 위한 중정구역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및 장비 등 약 18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약 3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최종 확정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의 도면을 보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희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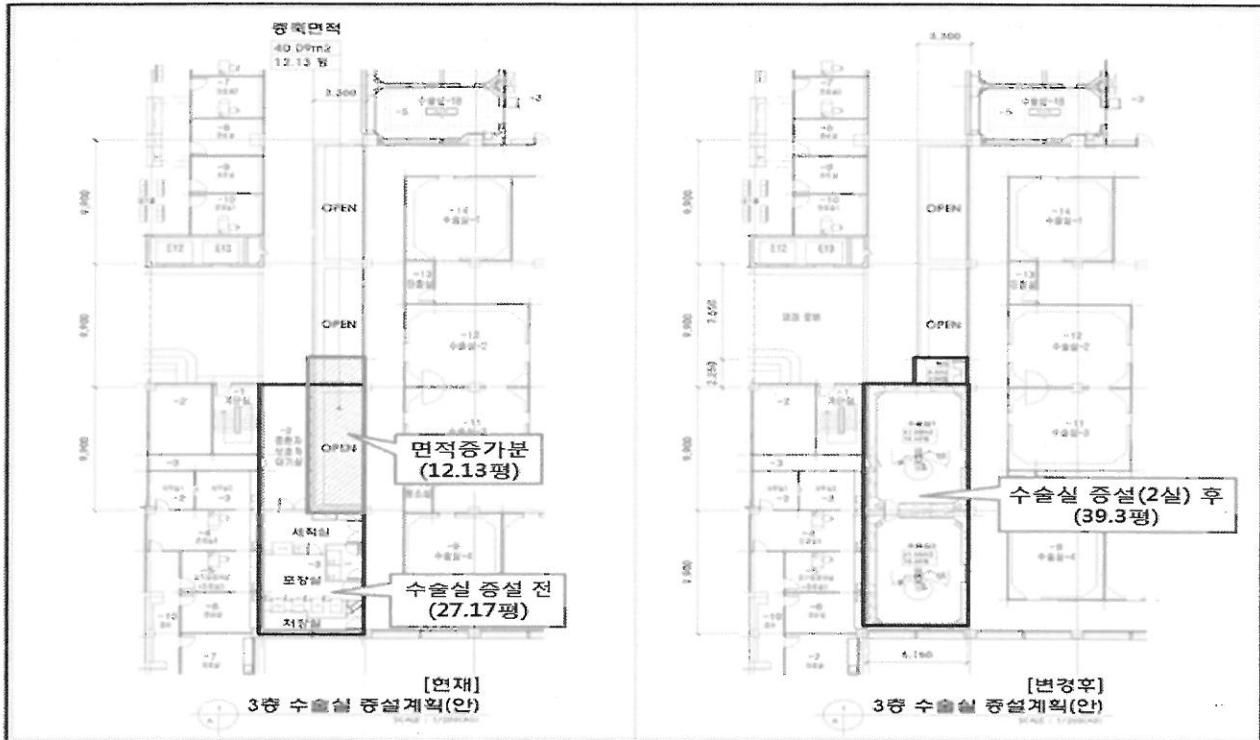
- 33 -

7/2 동연

이사

이영현

■ 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 내용



제 9 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의료기기, 기계기구 및 차량운반구 등 총 64점, 취득금액 1,491,693,148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성진 : 내용연수가 5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기동연

이사 이영현

제 10 호 2017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147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147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2017학년도 필수 의료장비 도입자금을 원화리스 147억원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 해당 원화리스를 다음과 같이 한도계약 하고자 합니다. 리스사는 롯데캐피탈주식회사로서 금리는 기준금리에 0.61%를 더한 2017년 3월 24일 기준 2.809%로 1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한도계약의 주요내용 및 의료기기 장비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상협 : 필수 의료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차입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희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147억원 한도계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화리스 147억원 한도계약 승인 내용

구 분	계 약 조 건	비 고
리 스 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계약금액	147억원	
리스기간	5년	
납부방법	3개월 후불	
금 리	기준금리 + 0.61%	1년 단위 변동금리
리스형태	금융리스	
담보제공	무담보 신용	
종료후 처리	무상양도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35 -

7/2 동연

이 사 이영현

제 11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임재익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계산서 총 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45,021백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금 수입은 125,084백만원, 전입금 수입 60,324백만원, 기부금수입 4,615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6,644백만원, 교육부대수입 12,392백만원, 교육외수입은 2,926백만원이며, 기타자산수입은 160백만원, 임의기금인출수입 3,968백만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입금수입이 70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8,8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보수가 117,088백만원, 관리운영비 23,343백만원, 연구비 6,622백만원, 학생경비 67,692백만원, 교육외비용은 1,053백만원이며, 기타자산지출 100백만원, 임의기금적립금이 12,911백만원, 유형고정자산매입이 5,283백만원이고 장기차입금상환액 1,0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이 30백만원으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9,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2.28 현재 교비회계의 자산총액은 313,941백만원, 부채총액은 74,157백만원, 기본금총액은 239,784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유동자금은 57,302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8,314백만원, 투자자산이 115백만원, 기타자산 1,039백만원, 임의기금 90,232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46,939백만원으로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2,728백만원 증가한 313,941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65,716백만원, 장기차입금이 7,0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는 1,441백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전년대비 1,250백만원 감소한 74,1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이 91,919백만원, 임의적립금이 90,232백만원, 운영차액이 57,633백만원으로 기본금의 합계는 239,784백만원으로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13,9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운영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운영총수익은 231,992백만원, 운영비용은 228,014백만원, 기본금대체액 12,911백만원, 운영차액 대체액 △ 3,968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 4,9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수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감사 결과 미국에 파견된 대학원생에 대한 성적부여 사례와 전자출결시스템 상 출석기준 미달학생에 대한 성적부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학생에 대한 성적부여 사례를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과목의 경우 수업일수가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에 교무팀에서 모니터링하여 학기 중에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입시수수료 산정 및 입시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입시수수료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연도별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4.5억, 2016년 △5.9억, 2017년 예상으로 △8.8억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입시수수료 지출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전형료 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전형료의 조정이 어렵다면 수입에 맞는 지출에 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기금 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의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3개년간 건축기금의 증감을 살펴보았는데 등록금 회계 건축기금 적립액이 2014년에는 45.8억에서 2015년 10.6억, 2016년 5.7억으로 감소하다가 2017에는 기금 적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및 대수선 등에 소요될 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록금회계 건축기금을 매년 일정규모 이상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요 건축소요계획 및 소요자금의 충당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창업보육센터 미수금 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미수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의 미수금은 2015년 25백만원, 2016년 56백만원, 2017년 100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업무처리기준 설정 등 미수금 관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차량 대여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연대의 임대버스 계약시 구매부서를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이 되었으며 내부품의에 근거하여 자금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에 대한 구매 관련 절차 및 규정 교육이 필요하고 재무회계팀의 자금집행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교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최 홍 : 교비회계 결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 37 -

7/2 동연

이사 이영현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2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총장 추천자 중 3인과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총장 추천자에 대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교원 명단 및 자세한 이력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장께서 추천하신 6인의 후보 중 3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총장 추천자 중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군 교수, 의학과 조기홍 교수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로 선임 · 의결하다.)

이 사 장 :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지난 해 이사회 의결에 따라 문길주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께서 징계위원을 맡아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며, 한 분의 이사님이 더 필요하여 의료원 관련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김성 이사님께 부탁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문길주,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군 교수, 의학과 조기홍 교수 등 6인을 임기 1년(2017.6.1 ~ 2018.5.31)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38 -

7/2 동연

이 사 이 영 현

제 13 호 2016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9,890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부속병원전입금 수입이 8,941백만원, 수익사업전입금 수입이 4,750백만원, 일반기부금 수입 1,250백만원, 예금이자수입 579백만원이며, 임대료수입 1,708백만원, 관리비수입이 223백만원, 잡수입 14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17,465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이 4,417백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77백만원, 임대보증금수입이 240백만원으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7,0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직원보수 744백만원, 시설관리비 168백만원, 일반관리비 296백만원, 운영비 302백만원이며, 지급이자는 278백만원, 전출금 9,995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11,783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 자산지출이 797백만원, 자산 및 부채지출이 3,153백만원으로 2016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14,1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2.28 현재 자산규모는 347,606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1,042백만원, 기본금총액은 336,5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이 14,071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40백만원, 설치학교 172,621백만원, 출자금 12,290백만원, 부속병원투자 79,873백만원, 원금보존 기타기금이 23,888백만원, 임의퇴직기금이 565백만원, 유형고정자산이 42,173백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47,606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54백만원, 장기차입금이 9,510백만원, 기타고정부채 1,478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1,042백만원이며, 출연기본금은 248,518백만원, 운영차액이 63,593백만원, 원금보존기타적립금 23,888백만원, 임의퇴직적립금 565백만원 등 기본금합계액은 336,564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47,6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의 운영수익은 20,123백만원, 운영비용은 14,072백만원, 기본금 대체액 753백만원 및 운영차액대체액은 4,417백만원으로 당기운영차액은 9,7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운영본부장 박재호 : 다음으로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39 -

76동51

이 사 이 영 현

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7,420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운영수입이 4,099백만원, 임대료 수입이 3,021백만원, 관리비 수입 17백만원, 이자수입이 1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7,138백만원으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보수가 669백만원, 시설관리비 25백만원, 일반관리비 377백만원, 운영비 612백만원이며, 재료비 545백만원, 일반업무회계전출금 4,750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6,978백만원이며, 자산 및 부채지출이 105백만원으로 2016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3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2.28 현재 자산총액은 13,164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468백만원, 기본금총액은 12,6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이 173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48백만원, 유형고정자산이 12,6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184백만원, 고정부채는 284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468백만원이며, 자본금 등 기본금 합계액은 12,696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13,1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운영수익은 7,138백만원, 운영비용은 7,428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2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성도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의견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기준에 따른 2017년 4월 1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8.5%로 타 학교법인의 확보율과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은 규모이며 전출 실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수익률인 3.5% 이상인 8.0%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법정부담률 또한 법정전출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40 -

기 동 연

이 사 이 영 현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외에 법인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법인회계 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4 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재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재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2016년 2월 3일 개최된 제322차 이사회에서 수익용 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이 가결되어 교육부를 통해 기채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기채 허가 후 1년 이내에 기채 실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획, 기본, 실 시설계에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 교육부 허가기한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 322차 이사회 승인을 근거로 교육부에 재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채 허가 재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 회신이 있어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승인 요청 내용은 지난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한 기채한도액 17,668백만원이며, 기채처는 제1금융권, 이율은 3.0% 이하로 기채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3년(5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기채액은 수익용 건물인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용도로 사용되며, 상환재원은 법인회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재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7/2 동연* 이 사 *이영현*

■ 기채 승인 내용

구분	기채 승인 내용
기채한도액	17,668,000,000원
기 채 처	제1금융권
이 율	3.0% 이하
기채기간	차입일로부터 13년(5년 거치 8년 상환)
담보물건	해당없음
기채용도	수익용건물(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상환재원	법인회계
기채미실행 사유	계획, 기본, 실시설계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일정 변경

제 15 호 법인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

(법인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기동연 이사 이영현

제 16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의안 제16호 대우학원 임원(감사) 선임(안)입니다. 본 법인 임원 중 2017.5.13부로 임기 만료된 문휘창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문휘창 감사는 개방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개방 감사셨습니다. 이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를 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문휘창 감사의 연임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이영현 상임이사께서 추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현 상임이사가 추천위원회 회의 및 추천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 사 장 :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 교수님들께서 좋은 분을 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기한의 불가피함으로 함께 논의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개방이사 또는 감사 선임 시에 서로 논의를 통하여 좋은 분이 선임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감사 후보자인 문휘창 교수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문휘창 교수의 개방감사 선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문휘창 교수의 개방감사 선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문휘창 교수를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임기 3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개방감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 명	성 명	임 기	비 고	직 명	성 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추 호 석	2015.9.18 ~ 2019.9.17		이사장	추 호 석	2015.9.18 ~ 2019.9.17	
이 사	김 성 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 사	윤 성 복	2017.4.28 ~ 2021.4.27		이 사	윤 성 복	2017.4.28 ~ 2021.4.27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동연

이 사 이영현

이 사	문 길 주	2016.3.31 ~ 2020.3.30		이 사	문 길 주	2016.3.31 ~ 2020.3.30	
이 사	신 희 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 사	신 희 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 사	김 동 연	2015.6.4 ~ 2019.6.3		이 사	김 동 연	2015.6.4 ~ 2019.6.3	
이 사	박 상 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박 상 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이 영 현	2017.4.19 ~ 2021.4.18		이 사	이 영 현	2017.4.19 ~ 2021.4.18	
이 사	김 선 용	2016.2.7 ~ 2020.2.6		이 사	김 선 용	2016.2.7 ~ 2020.2.6	
감 사	문 휘 창	<u>2014.5.14 ~ 2017.5.13</u>	개방감사	감 사	문 휘 창	관할청승인일로부터 <u>3년</u>	개방감사
감 사	배 홍 기	2016.4.28 ~ 2019.4.27		감 사	배 홍 기	2016.4.28 ~ 2019.4.27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28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아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동연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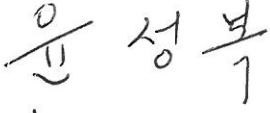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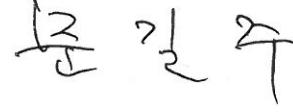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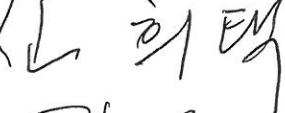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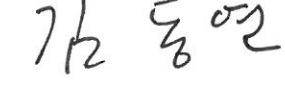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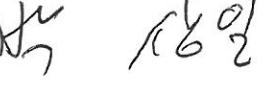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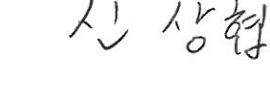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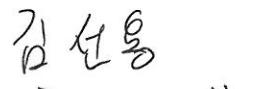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8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7년 5월 18일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성진	
이사	윤성복	
이사	문길주	
이사	신희택	
이사	김성	
이사	김동연	
이사	박상일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	최홍	
이사	김선용	
감사	배홍기	